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17호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통·폐합)에 관한 고시

1. 창구망 재정비(통·폐합)에 관한 사항

가. 우체국 통·폐합(폐국) 관서

총괄 국명	통폐합 관서명	관서급	위 치	업무 이관국
김제	김제죽산	6급 (시간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해학로 20	김제

나. 통·폐합(폐국)일 : 2026. 1. 2.(금) [업무종료일 2025.12.31.(수)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통·폐합일 익일(2026.1.3.)까지 유효